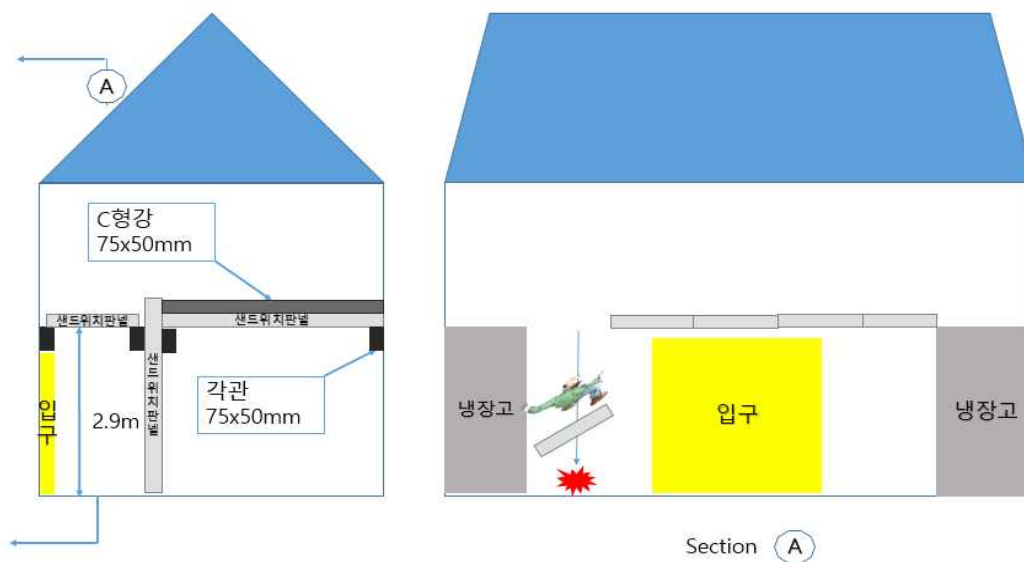


창고 천장 샌드위치판넬 해체 공사 중 떨어짐

공 사 명	○○○○푸드 창고 내부 판넬 해체공사	발생일시	2020.05.30(토) 14:30경
재해형태	떨어짐	재해정도	사망 1명
소 재 지	경기 광주시	공사규모	창고 내부 판넬 해체
재해개요	2020. 05. 30.(토) 14:30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○○○○푸드 창고에서 재해자 김0 0 (60세, 판넬공)가 창고 우측 편 천장에 설치된 샌드위치판넬을 해체하기 위해 창고 샌드위치 판넬(1,000mmX1,500mmX50mm)위로 올라가 이동하던 중, 판넬이 거치되어있던 각관(75mmX50mm)에서 이탈하여 판넬과 함께 약 2.9m 아래 창고 바닥으로 떨어져, 병원에서 치료 중 2020. 08. 24.(월) 07:00경 사망한 재해임.		

재 해 상 황 도



[그림] 재해상황도 모식도



[사진] 재해조사당시 현장사진에 표현한 재해상황도

안전대책	○ 『고소작업에 적합한 설비』 사용 또는 『떨어짐 방지조치』 철저 - 건물 천장 등 강도가 약한 재료 위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○ 떨어짐 위험장소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감독 철저 -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, 보호구 착용상태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. - 또한, 지급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 작업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하도록 함
	작업발판 안전대 착용 작업
	천장 점검통로 추락방호조치(예시)
	○ 위험성 평가 실시 철저 - 사업주는 천장 판넬 해체 등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사전에 천장 판넬 해체 작업 단계별 추락 및 낙하 등 재해방지에 대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을 결정하고, 해당 작업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떨어짐 방호설비 설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